

I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

● 등록요건

- 의료해외진출법(제6조 제1항)은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 요건을 규정

그림 1.2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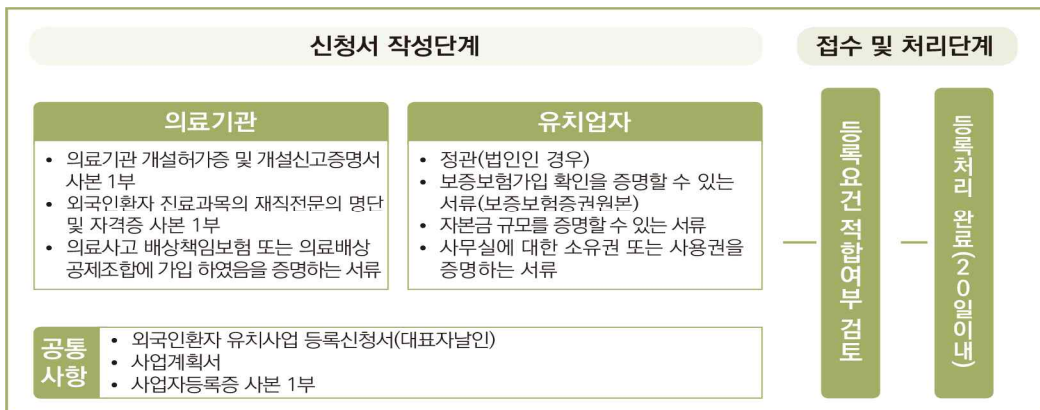


● 등록절차

- 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우편 제출
-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 기관 정보 전산 등록

* <https://medicalkorea.khidi.or.kr> 접속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유치기관등록신청정보 입력 및 저장

그림 1.3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 등록 구비서류(등록요건)

(의료기관 및 유치기관 공통)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신청서(대표자날인)
- 사업계획서(기관 기본사항,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내용 등 기술)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의료기관)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및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변경이력포함)
-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과목의 재직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1부
 - * 치과, 한의과 등은 의사 명단 및 의사 면허증 사본 제출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 종합병원급 이상 : 2억원, 병·의원급 또는 조산원 : 1억원
 - ** 보험대상 : 의료기관/외국인환자 공제여부 확인 필수

(유치기관)

- 정관 1부(법인인 경우)
- 보증보험 가입 확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보증보험증권 원본)
- 자본금 규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 법인 : 등기부등본(필히 '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 추가), 개인 : 은행잔고증명서
-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임대차계약서 등)

📌 등록 유지

-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 유효기간 : 등록일로부터 3년
 - * 유효기간 이후에도 유치사업을 하려는 경우 만료 전 갱신 필수
- 등록기간 중 등록요건 유지 필수
 - *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시정명령 통지
-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시 재등록 절차 필요

● 등록정보 변경 신청

- 아래의 해당 구비서류 제출

그림 1.4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 변경 제출 서류

구분	의료기관	유치업자
기본	· 변경신청서 · 기 발급된 등록증 원본 * 분실 시 분실사유서 첨부	· 변경신청서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 부동산등기부등본 · 기 발급된 등록증 원본 * 분실 시 분실사유서 첨부
대표자 변경	(추가) · 전문의자격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의료기관개설허가증	기본과 동일
상호 및 소재지변경 (도로명 주소 변환 포함)	(추가) · 사업자등록증 및 의료기관개설허가증	[상호변경] 기본과 동일 [소재지변경] (추가)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기타	[전문의 변동에 따른 변경신청] (추가) · 재직증명서 · 전문의명단 및 자격증 사본	[보증보험 갱신] 보증보험증권 원본 또는 인터넷 발급용 [임대차계약사항 변동] 임대차계약서 [자본금 변동] 대차대조표(법인등기부등본), 은행잔고증명서(개인)

- 유치기관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정보는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을 통해 상시 변경 가능
-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처에 변경사항을 고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불이익에 대해서는 해당 유치기관에 책임이 있으므로 등록이 유지되어 있는 기간 동안 상시 점검 요망

● 등록증 재발급 신청

-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 되어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
- * 기 발급된 등록증 원본 반납(분실 시 분실사유서 첨부)

● 등록기관의 유치사업 폐업 신청

- 폐업신고서, 조치계획서, 기 발급된 등록증 원본 제출

● 유치사업 등록 취소

-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 대상 이외의 자를 유치하려는 행위를 한 경우
- 외국인환자유치 등록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에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 소개·알선 받은 경우
- 의료해외진출법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 등록이 취소된 기관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재등록 가능

●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관련 문의

-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 1600-6767(내선 1), ☒ medicalkorea@khidi.or.kr

II 외국인환자 유치지원 사업 근거

● 「의료법」 개정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허용(2009년)

의료법(제27조의2) 개정으로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유치기관과 유치업자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환자를 대상으로 소개·유인·알선 등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가 허용됨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제도의 의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에 일정 요건을 갖춰 등록하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 등을 방지하여 외국인 환자에게 제공되는 한국 의료서비스 수준 관리 목적

- ※ 의료법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 유치기관은 실적보고를 하도록 규정
- ※ 국내 의료서비스에 미치는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유치 병상수 제한, 국내보험회사의 유치업 제한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6년)

의료해외진출법은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편의성 및 안전성 증진 등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제정

- ※ 외국인환자 사전·사후 관리, 유치기관 평가지정 제도, 외국인 대상 의료광고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
- ※ 과도한 유치 수수료의 제한,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사항 안내 등을 통한 외국인환자 대상 수준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

Ⅲ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 범위

●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란?(외국인환자유치지원법 제2조 제3호)

-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

그림 1.1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 범위

“의료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행위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상담 또는 진료예약을 받거나, 유치업자나 해외 의료기관·에이전시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아 진료하는 행위② 외국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에게 진료정보 제공 행위③ 외국인 전담인력 채용, 의료관광비자 발급, 교통·숙박 안내 등 외국인환자를 위한 편의 제공 행위
---------------------------------------	---

● 진료예약·계약 체결이란?

-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상담 또는 예약을 받는 행위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제외
- 유치업자, 해외 의료기관 및 에이전시 등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받는 행위

●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이란?

-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설 및 SNS 운영
 - * 국제통용어인 영어로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는 유치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나, 진료예약상담 및 외국인환자 대상 특화된 정보를 영어로 제공하는 경우는 ①진료예약계약체결에 해당되므로 유치행위임
-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 행위
 - * 보세판매장 등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에서만 허용(외국인환자유치지원법 제15조 제1항)
- 외국인환자를 다른 유치 의료기관에 소개·알선 해주는 행위
- 컴퓨터, 화상통신,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환자 건강 및 질병 상담 교육 등 사전·사후 서비스 제공 행위

🗨️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 제공이란?

- 외국인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상품 개발·판매, 할인쿠폰 발행·제공 하는 행위
- 외국인 전담 간호사 및 코디네이터, 통역사 등을 고용하여 외국인환자 대상 서비스 제공 행위